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공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디딤돌	첫걸음	지방청 R&D	'25년	'26년	'26년	'26년
		여성참여활성화 R&D	12월 23일	1월 6일~1월 23일	2월~3월	3월~4월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공고 내 1개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불가)

※ [예시] 지방청 R&D 신청 + 여성참여활성화 R&D 신청 → 불가

3. 지방청 R&D에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지방청 R&D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 2], [붙임 3]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디딤돌	첫 걸음R&D	지방청R&D	디딤돌	첫 걸음R&D	지방청 R&D
		도약R&D	여성참여활성화 R&D			여성참여활성화 R&D
			글로벌 R&D		글로벌 R&D	
			연계지원 R&D		연계지원 R&D	
			부처연계 R&D		전략기술 R&D	
			소부장 R&D			
여성참여 활성화	<신 설>			(자격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만 가능		
특화지표	대면평가시 지방청별 특화지표(20점) 운영			지방청별 특화지표명, 평가방법 등 일부 수정		
가점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신 설>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기타사항	<신 설>			(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신 설>			(서식 개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삭 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삭 제>		

3. 2026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1차)) 400억원 내외 (400개 과제 내외)

구 분		예산	과제수
첫걸음R&D	지방청 R&D	350억원 내외	350개 내외
	여성참여활성화 R&D	50억원 내외	50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6개월, 2억 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참고문서
지방청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가 지방청 R&D 공고 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	붙임 ②
여성참여 활성화 R&D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여성참여활성화 지원자격 >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 ②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③ (여성연구자 중심)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붙임 ③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 1-2]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6. 1. 6.(화) ~ 1. 23.(금), 18:00까지

* 지방청R&D 과제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은 [붙임 2], [붙임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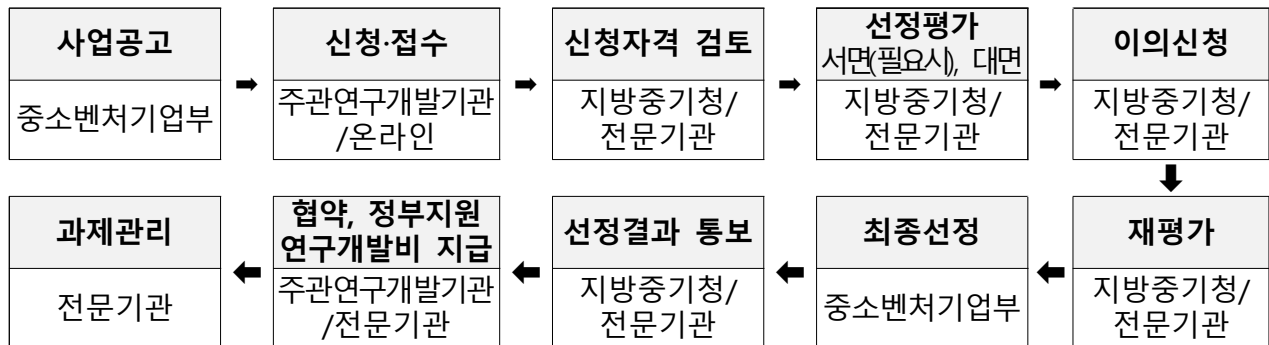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방청 R&D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 R&D)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여성참여활성화 R&D)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공통)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Ifqd

[붙임 1-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 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 2] 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붙임 3] 여성참여활성화 R&D 세부 지원내용

[붙임 4] 제출서식

참고1**신산업 창업 분야(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준)**

- **(유의사항)** IRIS시스템 접수 시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중소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 필수 선택 필요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분야 미선택” 또는 “기업이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지원 제외됨

신산업 창업분야 목록	
① 인공지능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② 빅데이터	⑯ 미래형 선박
③ 5G+	⑰ 재난/안전
④ 블록체인	⑱ 스마트시티
⑤ 서비스플랫폼	⑲ 스마트홈
⑥ 실감형콘텐츠	⑳ 신재생에너지
⑦ 지능형 로봇	㉑ 이차전지
⑧ 스마트제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⑨ 시스템반도체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⑩ 자율주행차	㉔ 우주
⑪ 전기수소차	㉕ 차세대 원전
⑫ 바이오	㉖ 양자
⑬ 의료기기	㉗ 사이버 보안
⑭ 기능성 식품	㉘ 해당없음(업력 7년 이하)